

홈페이지 관리 운영규정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대한안경사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의 홈페이지 관리와 운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홈페이지 정확을 위하여 홈페이지 관리운영위원회를 두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홈페이지 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)

①홈페이지 관리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구성은 협회 홍보위원회로 하며 임기도 홍보위원회와 같이 한다.

제3조 (회의 소집)

- ①회장의 지시나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.
- ②제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또는 지시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.
- ③기타 긴급한 사항이 발생시 소집한다.

제4조 (홈페이지의 가입 조건과 권한의 범위)

- ①정회원(협회 가입 안경사), 준회원(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안경사 면허 소지자), 일반회원(학생, 업체관계자 등)으로 구분한다.
- ②정회원은 홈페이지의 게시판 중 협회소개, 알림마당, 안경계, 정보마당의 읽기 권한과 교육마당, 나눔마당, 참여마당의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가진다. 단, 교육마당과 나눔마당의 자료실은 읽기 권한만 가진다.
- ③준회원은 협회소개, 알림마당, 안경계, 정보마당, 교육마당의 읽기 권한과 나눔마당의 읽기와 쓰기 권한을 가진다. 단, 나눔마당의 자료실은 읽기 권한만 가진다.
- ④일반회원은 협회소개, 알림마당, 안경계, 정보마당의 읽기 권한을 가진다.
- ⑤홈페이지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이용약관의 가입 조건이 충족할 때 가입할 수 있다.

제5조 (가입의 제한)

- ①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자(회비 미납부자, 교육미필자, 종사자 미신고자 등)
- ②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
- ③홈페이지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
- ④타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
- ⑤기타 협회 발전에 지장의 초래가 예상되는 경우

제6조 (홈페이지 게시글의 삭제)

- ①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
- ②홈페이지 이용시 공공질서 위배.미풍양속에 저촉되는 경우
- ③타 가입자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주는 경우
- ④법령 및 홈페이지 약관을 위반하여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
- ⑤홈페이지를 무단 도용하여 범죄행위에 사용한 경우
- ⑥위원회에서 삭제 의결이 확정된 경우

- ⑦회원의 비방이나 욕설 등 부적절한 경우
- ⑧기타 협회 운영 관리에 관계되지 않은 경우

제7조 (홈페이지 이용 중지)

- ①제5조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
- ②제6조의 사항이 발생하여 1차 주의(경고)를 하였음에도 시정치 않는 경우

제8조 (위원회 의결사항)

- ①제4조, 5조, 6조, 7조에 의거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
- ②회장의 지시와 위원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
- ③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9조 (이용의 복원)

- ①홈페이지 관리 운영규정에 의하여 금지당한 가입자는 이유가 있을시 서면으로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②위원회는 15일 이내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한다.

부칙

1. (시행일)

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된 날로부터 15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한다.